## 5.1.5 방송국규정

제정 1997. 08. 30.

- 제1조(명칭) 본 방송국은 초당대학교 방송국(이하 "본국"이라 한다)이라 하며, 호출부호는 C.U.B.S(ChodangUniversity Broadcasting System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본국은 방송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학풍을 진작하며 교내외의 공지사항을 신속 보도 하여 정서적 교육효과 제고에 기여하고 방송기술의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위치) 본국은 초당대학교 안에 둔다.
- 제4조(사업) 본국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정규 방송
  - 2. 임시·특별 방송
  - 3. 방송 문화 행사
  - 4. 기타 관련 사업
- 제5조(방송국장) 방송국장은 총장이 되며, 운영전반을 통할하고 본국을 대표한다.
- 제6조(방송주간) 방송주간은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방송국장의 명을 받아 운영전반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다.
  - 1. 방송국원의 부서별 임무 부여
  - 2. 방송기자재 관리와 보수 정비
  - 3. 방송내용 및 프로그램의 제작 지도
  - 4. 기타 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
- 제8조(운영위원회) 본국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자격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.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인 방송국장과 방송주간을 포함하여,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로 한다.
  - 2. 운영위원장은 방송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방송주간이 된다.
  - 3. 운영위원회는 본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한다.
- 제9조(방송국원) 실무국장은 전 방송국원을 대표하며, 본국의 실무를 관장하고 방송업무에 관하여 국원을 지휘 통솔한다. 그 밖의 각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. 제작부장은 프로그램 제작
  - 2. 보도부장은 방송기사 취재 및 기사 작성
  - 3. 아나운서부장은 방송
  - 4. 기술부장은 방송기자재의 보수·조정
- 제10조(방송 프로)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며, 실무국장은 매학기의 방송시간 및 프로그램을 직전 학기말에 편성하여 방송주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11조(국원) 본국은 학생으로 구성된 수습국원, 정국원으로 구별하여 국원을 구성하며, 정국원은 본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자격 요건) ① 실무국장은 정국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  - ② 각 부장은 정국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  - ③ 정국원은 수습기간 6개월 이상 전과정을 마친 자
- 제13조(자격 제한) 수습국원 및 정국원은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.
- 제14조(국원 선발) 정국원과 수습국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정 국 원 : 6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마친 자 중 실무국장이 추천하여 방송주간의 승인을 얻은 자
  - 2. 수습국원 : 본 대학교 재학생 중(1. 2학년) 소정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
  - 3. 유 시 험 :
    - 가) 응시자격 : 본교 1, 2학년 남 여 학생
    - 나) 응시과목: 음성테스트, 논문, 영어, 상식, 음악, 면접
  - 4. 특 채 : 방송 관련 분야에 탁월한 기술을 가진 본 대학교 재학생
- 제15조(임원 선발) ① 실무국장은 정국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, 선출된 실무국장 은 방송주가 제청으로 방송국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부장은 실무국장의 제청으로 방송주간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.
- 제16조(학생임원 임기) ① 실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유고시에는 1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마치도록 한다.
  - ② 각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제17조(국원회의) 국원회의는 정국원으로 구성하되 실무국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, 재적인원 2/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8조(징계 및 자격상실) ①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단히 임무를 포기한 국원(수습국원을 포함)에 대해서는 본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.
  - ② 국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1. 휴학자 및 정학처분을 받은 자
    - 2.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.5 미만인 자
    - 3. 방송국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였다고 운영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자
    - 4. 본국의 규정을 위반한 자
- 제19조(대출 승인) 본국의 기자재를 반출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방송주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0조(재정) ① 본국의 재정은 기성회비 및 총학생회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  - ② 본국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제21조(시행 세칙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습 및 별도의 방송운영규정에 따른다.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